

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국제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가.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(상담실)과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

- 1)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,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
- 2) 녹음기,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

나. 책상, 전화기, 컴퓨터,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

2. 인력기준

가. 나목에 따른 기준을 갖춘 상근직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

나. 자격기준: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학력, 경력 또는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- 2)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아동·청소년·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3)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
- 5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